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.

발 의 자 : 권칠승 · 이성윤 · 박정현
임호선 · 김남희 · 박균택
이상식 · 한준호 · 전용기
윤준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‘의료기관개설위원회’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 허가 여부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임. 해당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인력·시설·장비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,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도용해 설립하는 불법 개설 기관(이하 “사무장병원”이라 한다)의 진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.

그러나 현 형태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위원 자격이 의료인 및 의료단체의 회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불법개설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또한 개설 허가 심의 시 실질적인 불법 개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제출 요구나 관련자 의견 청취 등 조사·확인 절차가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현행 심의 체계로는 사무장병원의 잠재적 진입

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위원 자격요건의 범위에 보건의료 행정을 담당하는 시·도소속 공무원과 불법개설 조사 및 단속 업무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.

이와 함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여 심의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.

결국, 위원 자격의 객관성·전문성 보완 및 불법개설 심의 절차 신설을 통한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,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함으로써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(안 제33조의2).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제28조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·조산사회 및 「간호법」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양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·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·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으로서 요양급여비용 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

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되,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의2(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·조산사회 및 「간호법」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의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·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 <신 설>	제33조의2(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제28조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·조산사회 및 「간호법」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의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.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·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. 보건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·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.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으로서 요양급여비용 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제1

③ (생 략)	<u>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</u> <u>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</u> <u>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</u> <u>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</u> <u>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 할</u> <u>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</u> <u>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</u> <u>에 따라야 한다.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----------------	---